충청남도 간행물등록번호
6440878-2019-002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9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충청남도인권센터

도지사 인사말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습니다. 반인도적·반문명적 참화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는 인류의 역사적 서약이었습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 첫 머리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충남이 추구하는 인권도정 역시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충남의 인권도정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습니다. 2012년 5월, 우리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도정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차별과 혐오의 벽에 부딪쳐 인권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교육, 상담, 실태 조사 등 인권도정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한 도민들의 열망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망이 모여 우리는 다시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권도정은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치, 경제, 문화, 환경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 인권을 뿌리내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2019년 충남은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첫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지나쳐 온 인권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활동들이 하나하나 쌓여 충남의 인권은 진일보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소중한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도정은 도민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 양 승 조

인권센터 인사말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의하면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인권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에는 인권영향평가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충남도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도 실험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겁도 없이 달려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시행이라는 결과를 내었고 시책의 경우도 시책 중에서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3건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책의 경우도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이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행정 모든 분야가 인권과 관련 없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도민들에게 인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이 단순히 행정의 수혜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행정 속에 담아낼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는 자치법규만이 아니라 시책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공공건축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충남도의 행정은 인권 친화적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충남도에 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되는데 초석을 다져준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 인권지킴단, 인권영향평가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 차

1. 인권영향평가란? ····· 09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15

1) 시행개요 ····· 17

2) 추진현황 및 권고 사례 ····· 25

3. 시책 인권영향평가 ····· 51

1) 시행개요 ····· 53

2)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 61

3) 자살률감소대책 ····· 70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79

4. 2019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며 ····· 89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 91

2)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 91

부 록(충청남도 인권센터) ····· 93

1 인권영향평가란?

1 인권영향평가란?

I 개 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려면 조례와 규칙 등 추진근거가 있어야 하며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 등에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은 도민의 세금이 재원이므로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정책 수혜자 및 관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정책 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를 사전 또는 시행 중, 사후 평가를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II 외국 및 타지자체 도입 사례

세계 여러도시에서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의 애버딘시에서 시행하는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시행하는 인권영향분석, 킹 카운티의 평등영향평가, 유지시의 트리플 바텀라인과 홍콩 코우룬시의 사회영향평가 등 명칭은 다르지만 도시별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광명시, 은평구, 경기도 수원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인권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광역차원의 인권영향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Ⅲ 충청남도 추진 현황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항에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2항에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조례·규칙과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도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법제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등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책의 경우도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3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건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인권영향평가 세부 내용

인권영향평가의 기준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관련 법률과 국제인권법 등 인권 규범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사회권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 등과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이 그 예이다.

인권영향평가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평가 전반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즉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평등과 비차별(equality),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적인 실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tion)이 그것이다.

평가방식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센터에서 수행하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부서에 권고하고, 시책 등 정책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인권위원 등이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단에서 수행한 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자체별로 평가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센터에서 수행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와 시범운영중인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충남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 시행개요
2) 추진현황 및 권고사례

1 자치법규「인권영향평가」시행개요

Ⅰ 추진 근거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증진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함.
- 지자체 자치법규와 시책은 지역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인권적 차원에서 점검한 후 시행할 필요 있음.
- (타시도 시행)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성북구 등

Ⅱ 추진 방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사전평가

- 대상/시기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 / 법제심사 전
  * 자치법규 총수 : 605개(조례 461, 규칙 144 / 2018년 말 기준)
  - 2018년 제·개정(103개) : 조례 78(제정33, 개정45), 규칙 25(제정3, 개정22)
- 절차/실국협조사항
- (조례제·개정 부서) 인권영향평가 의뢰 전, 점검표에 의한 자체평가(붙임1,1-1)
- (부서 → 인권센터) 점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인권센터에 통보
- (인권센터 → 부서) 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 통보(붙임1-2)
- (부서 → 인권센터) 수요여부 검토 후 부서의견서 인권센터 통보(붙임1-3)

- (부서 불수용시) 인권보호관회의(비상임 + 상임)에서 검토 후 통보(붙임1-2)
  *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의뢰하는 절차와 동일

평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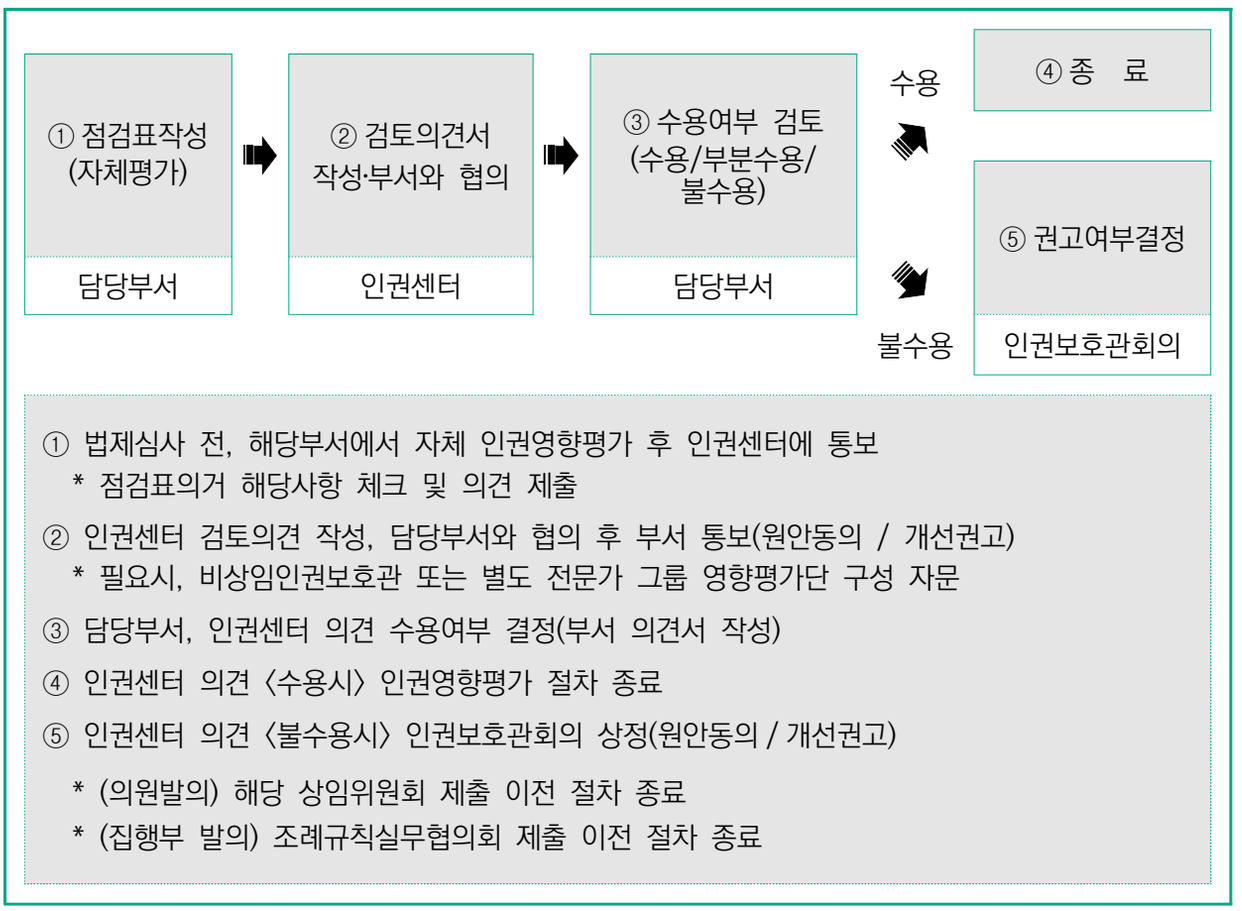

평가 기준

- 자치법규의 내용 자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와 자치법규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과 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평가
- 차별의 기준으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평가
- 자치법규 조문에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평가 항목 : 기본권제약,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등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붙임 1, 붙임 1-1)

붙임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조례·규칙명	충청남도 00000000 조례(규칙)		
구 분	□ 제정 □ 개정		
관련법령	00법률 제00조,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 - - ~	20 - - (일간)
	법제심사	20 - - ~	20 - - (기간중 예정)
붙임자료	필수자료	조례·규칙안 및 방침자료, 점검표, 관련규정(고시,훈령,지침 등)	
	기타자료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자체개선 (예로 체크한 경우)
기본권제약	관련조항이 국내외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인권침해	관련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 (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구제수단	관련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전화번호

붙임 1-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참조사항

<table>
<tr><th>구 분</th><th>검 토 내 용</th></tr>
<tr><td rowspan="3">기본권제약</td><td>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 검토
- 세계인권 선언 등 고려(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td></tr>
<tr><td>기본적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검토
<table>
<tr><th>인권분야</th><th>세 부 내 용</th></tr>
<tr><td>민주적
참여권</td><td>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td></tr>
<tr><td>주거권</td><td>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td></tr>
<tr><td>교육권</td><td>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td></tr>
<tr><td>건강권</td><td>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td></tr>
<tr><td>문화권</td><td>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td></tr>
<tr><td>안전권</td><td>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td></tr>
<tr><td>환경권</td><td>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td></tr>
<tr><td>이동권
접근권</td><td>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td></tr>
<tr><td>노동권</td><td>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td></tr>
<tr><td>개인정보
보호권</td><td>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td></tr>
</table></td></tr>
<tr><td>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도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
- 불허가 기준으로 ‘공익’, 제한요건으로 ‘공공의 안전’ 등</td></tr>
<tr><td rowspan="2">인권침해</td><td>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가 있는지 검토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비혼모,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이 있는 사람, 비정규노동자,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등</td></tr>
<tr><td>‘정상인, 정신병자 등’ 인권침해적 용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td></tr>
</table>

붙임 1-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회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회의)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인권센터	직위				
		성명(전화번호)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붙임 1-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인권센터 검토의견서)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인권센터 검토의견서)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용 여부	불수용 및 부분수용시 부서 의견	비 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작 성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참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개정

❖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2019. 8. 1.)에 따른 법제사무처리 규정 개정요청 사항 임

※ 개정대상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 규정」(2012.09.10.훈령 제1292호)

Ⅰ 관련 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Ⅱ 개정이유

- 도지사는 자치법규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법제심사 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과 같이 인권영향평가 실시 조항을 신설
- 道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2019. 3월부터 입법예고 된 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명확한 운영 근거 마련

Ⅲ 개정 내용

-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4조(입안시 유의사항)
  제13호에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13.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분석평가책임관·법제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13.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 분석평가·<u>인권영향평가,</u> 규제심사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분석평가책임관·<u>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u>·법제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권고사례

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상황

□ 인권영향평가 개요

❍ 대 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시행일 : ’19. 8. 1.(전면시행) * 시범운영 ’19.3.~6.

❍ 내 용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도민에게 미칠 인권침해와 차별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

□ 그동안 추진상황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마련(’19. 4월)

❍ 제·개정 입법예고 조례·규칙 대상 시범운영(’19.3.~6월 / 12건)

❍ 인권영향평가 전면시행(’19.8.1.)

-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 반영(’19.7.30.)

※ 추진실적(세부실적 별첨)

(단위 : 건)

구 분		원안동의	수정권고	
			수용	진행중
합계	43	32	11	
시범운영	12	10	2	
전면시행	31	22	9	

* 수정권고 : 11건(시범운영 2, 전면시행 9)

붙 임 인권영향평가 추진 실적

시범운영('19. 3~6월) : 12건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권고/수용
2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안	수정권고/수용
4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동의
5	사회재난과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원안동의
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동의
10	자연재난과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원안동의
11	세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원안동의

전면시행('19.8.1. 이후) : 31건(11월 26일 현재)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	화재대책과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2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3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동의
4	기획조정실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수정권고/수용
6	화재대책과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8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동의
9	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0	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11	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권고/수용
12	충청남도의회사무처운영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권고/수용
13	균형발전담당관	충청남도 정주여건 조성 지원조례(안)	원안동의
14	해운항만과	충청남도의회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수정권고/수용
15	의회농업경제환경전문위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6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7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수정권고/ 수용
18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권고/ 수용
19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동의
20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권고/ 수용
21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원안동의
22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 조례안	수정권고/ 수용
23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4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25	의회안전건설해양 소방전문위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조례안	원안동의
26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8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원안동의
29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원안동의
30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31	충청남도수산자원 연구소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정권고/ 수용

II 권고 사례

수정권고 세부내역 : 11건

연번	조례명	권고 사항	조치 결과	비고
1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위원회 구성시 재량권 남용 제한, 도민의 참여방법 제시 ▸위원 해촉 사유에서 명확성 결여, 재량권 남용 부분 삭제	수용	
2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제정안	▸영세소농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약자에 포함 ▸'어획물'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	수용	조 례 미제정
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출향도민회 등에 대한 지원금 표현 일원화	수용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의 역할 중 수직적 관계로 보이는 '보좌'라는 표현 삭제	수용	
5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의사결정 과정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 비율(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	수용	
6	충청남도의회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의사결정 과정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 비율(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	수용	
7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의사결정 과정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 비율(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	수용	
8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위안부라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표현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일본군 성노예'로 명칭변경	수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
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대장의 역할 중 수직적 관계로 보이는 보좌'라는 표현 삭제 ▸부대장은 직책에 따라 대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신 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리'라는 표현을 '대행'으로 명칭변경	수용	

연번	조례명	권고 사항	조치 결과	비고
10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 조례안	▸위원회 구성시 재량권 남용 제한, 조항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수정 ▸위원회 구성 중 의사결정 과정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 비율(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	수용	
11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명칭변경 / 영어(營漁)→어업경영 ▸위원회 구성 중 의사결정 과정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 비율(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 ▸교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조치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 권고	수용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및 의견서**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나목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다목에 위원회 구성시 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게 일반 도민의 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제4항에 일반 도민의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다목을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추가하고, 제4항을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꾸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순번만 바꾼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참조
제9조(위원의 해촉) 제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5호는 명확성 결여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삭제	제9조 제5호 삭제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항 참조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충청남도 인권센터
2019.02.12

대상 자치법규

- 4차산업혁명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실·국장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한 자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각계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국장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한자
2.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자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제5호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내용

- 제8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에 도지사가 지명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에게는 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이는 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와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제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원 해촉에 대한 재량권을 준 것으로 해촉 사유가 정해지지 않아 위원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소신껏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위원의 해촉 사유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없으므로 제5호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 참조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의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8조,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을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

- 제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을 추가하고, 제4항에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국장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한자
2.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자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 제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안」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제3조(정의) 제6호 “농업약자”란 1,000㎡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고 연간 농업생산액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금액”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제3조(정의) 제6호의 “농업약자”에 1,000㎡미만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과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있어 영세소농을 차별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권고.	제3조(정의) 제6호 “농업약자”란 소규모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연간 농업생산액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금액”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어획물 매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 어획물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 명확성이 결여되므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을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수산물 매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충청남도 인권센터
2019.02.12

대상 자치법규

- 충청남도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 기본 조례안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조(정의) 제6호는 「"농업약자"란 1,000㎡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고 연간 농업생산액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 금액"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먹거리 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상태를 말한다.
"지역 먹거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도에 소재한 업체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및 제조자 설계생산(ODM) 방식으로 별도로 지정된 도 외부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도내 소비를 확대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음식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농업약자"란 1,000㎡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고 연간 농업생산액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금액"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건강한 먹거리"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무농약)·우수관리 인증(GAP)·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 관리기준(PLS) 농산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품질 인증 받은 수산물, HACCP 등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식품을 말한다.

-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에는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어획물 매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 농산물의 친환경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어획물** 매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다. 농업약자 등의 농산물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농수산인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인 조직화에 관한 사항
바.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농·수협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검토내용

- 제3조(정의) 제6호의 “농업약자”에 1,000㎡미만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과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있어 여성과 고령자가 대부분인 영세소농을 차별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권고.

◇ 법적 근거

-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에 어획물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 이는 조례의 수혜 대상인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방안

- 제3조(정의) 제6호를 「“농업약자”란 소규모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연간 농업생산액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금액”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로 수정한다.
-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2항 제1호 나목을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수산물 매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수정한다.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결과 통보일	2019. 8. 23.

해 당 조 항	검 토 결 과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조례 제1조의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출향도민 조례의 지원범위를 제정안에서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면서 상위법인 조례보다 범위가 축소가 되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차별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향도민 조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정해야 할 것 이라고 판단됨.
제3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출향도민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도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출향도민회 및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출향도민회 등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에 대하여 출향도민 조례와 제정안의 표현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조금이라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춰 제정해야 될 것 이라고 판단됨.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기획조정실	결과 통보일	2019. 9. 27.
해 당 조 항		검 토 결 과	조치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②의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 업무이며 보좌라는 표현은 수직적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제14조②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표현을 삭제해야 할 필요 있음. 아울러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에 같은 조례가 있지만 보좌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은 없음.	개선권고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결과 통보일	2019. 9. 23.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제4항 추가할 것을 권고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개정안 제22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자문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제정(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제정(안)		
입안주무부서	해운항만과	결과 통보일	2019. 10. 8.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명과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 ① (생략)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 내용으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성비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제4조 제1항에 특정성별 비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결과 통보일	2019. 10. 17.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6조(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③~⑤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 제2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 ② (생략)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개정안 제22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자문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결과 통보일	2019. 10. 17.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제1호에 표현된 “위안부”는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음.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있다. 〈개선권고 안〉 제2조 제1호에 “위안부”라는 표현을 “일본군 성노예”로 명칭변경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결과 통보일	2019. 10. 18.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권고 사항 1**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에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있다. 부대장의 역할은 대장이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 업무이며 보좌라는 표현은 수직적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제7조의2의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를 삭제하는 것을 권고. **권고 사항 2** 아울러, 같은 조에서 “대리”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대행”이라는 표현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부대장의 역할이 보좌업무가 아니며 부재 시 직책에 따른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라는 표현을 대행으로 바꿀 것을 권고.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결과 통보일	2019. 10. 18.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동안 도내 발주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권고 사항 1**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2항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여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제19조의7(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한 대로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조의7(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가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임기 동안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권고사항 2**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의사결정 참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 할 것을 권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 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결과 통보일	2019. 11. 13.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영어(營漁)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제9조(상벌)** ② 교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권고 1안] 명칭변경 권고** **제1조(목적)** 명칭변경 영어(營漁)→어업경영 〈개선권고 사유〉 '영어(營漁)'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권고 2안] 추가 수정 권고** **제5조(위원회)** 제4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 ④ (생략)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권고 3안] 전체 수정 권고 **제9조(상벌)** ② 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교장이 학생의 경고나 퇴학 등 징계조치를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교장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므로 징계조치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할 필요 있음. 또한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수업분위기를 해친 경우는 징계가 아니라 교육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할 것을 권고함.

3 시책 인권영향평가

1) 시행개요
2)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3) 자살률감소대책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1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행개요

Ⅰ 추진 근거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자치법규·시책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증진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함.
- 지자체 자치법규와 시책은 지역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인권적 차원에서 점검한 후 시행할 필요 있음.
- (타시도 시행)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성북구 등

Ⅱ 추진 방법

- 대 상 :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신규 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
  - 인권침해 우려 및 도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 평가방법 : 평가단 구성해 평가 기준(점검표 참조) 만들어 모니터링
- 평가항목 :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권증진활동, 인권침해가능성, 향후 인권적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는 사업계획 등
  ※ 시책관련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붙임1)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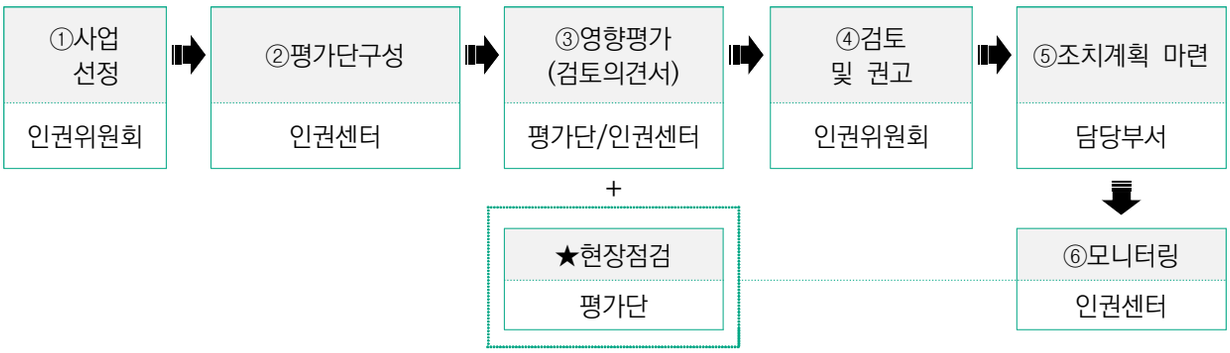

① 도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사업 또는 주요 신규사업 선정
  * 인권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논의 과정을 통해 선정
②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 10명 이내(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관련 전문가 등)
③ 평가단 논의 및 의견서 작성 (전문가 검토의견 및 컨설팅 첨부)
  * 초안 작성(인권센터) → 평가단 논의·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2~3회)
  ★ 필요시, 인권영향평가단 -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인터뷰 실시
④ 인권위원회 최종 검토(권고여부 등 판단)
⑤ 검토의견에 따른 담당부서 조치계획 등 전달
⑥ 담당부서 조치계획 또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관련 모니터링
※ 평가결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조정(변경)을 목표로 하나 최소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평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고려 결정(9~10월)

붙임 1 주요시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사업명	비예산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구 분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소관부서		직급		성명		전화 번호	
붙임자료	*해당 사업계획(안) 및 관련 자료						

Ⅰ. 개 요

□ 사업목적

□ 추진근거

❍

□ 주요 사업 내용

❍

❍

□ 예산현황

사업명	예 산		
	전년도(A)	당해 연도(B)	증감(B-A)

Ⅱ. 인권적 관점에서의 사업환경 특성

□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권분야 (*해당부분 모두 체크)

인권분야	세부내용	해당 여부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개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 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및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권	공공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 받을 권리	

□ 사업 수해와 관련된 사회적 집단 (*해당부분 모두 체크)

인권약자	해당여부	인권약자	해당 여부	인권약자	해당 여부	인권약자	해당 여부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비정규직노동자		병력이 있는 사람	

Ⅲ.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권 증진 활동

□ 인권약자/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별 반영 노력

분석평가 항목		해당여부
1.권리별 반영노력	1. 인권약자에 대한 민주적참여권 반영	□있음 □없음
	2. 인권약자에 대한 주거권 반영	□있음 □없음
	3. 인권약자에 대한 교육권 반영	□있음 □없음
	4. 인권약자에 대한 건강권 반영	□있음 □없음
	5. 인권약자에 대한 문화권 반영	□있음 □없음
	6. 인권약자에 대한 안전권 반영	□있음 □없음
	7. 인권약자에 대한 환경권 반영	□있음 □없음
	8. 인권약자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반영	□있음 □없음
	9. 인권약자에 대한 노동권 반영	□있음 □없음
	10. 인권약자에 대한 개인정보/사생활보호권 반영	□있음 □없음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작성

1-1. 인권약자에 대한 00권 반영

❍ (분석근거)

※ 관련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인권약자에 대한 00권 반영

❍ 분석근거

※ 관련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인권약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노력

분석평가 항목		해당여부
2. 형평성 확보 노력	1. 사업수혜에서의 사회적 집단별(약자) 특성 반영	□있음 □없음
	2. 예산배분에서의 사회적 집단별(약자) 반영	□있음 □없음

2-1. 사업수혜에서의 사회적 집단별 특성 반영을 위한 주요 활동

❍ *(분석근거)*

❍ 사회적 집단별 격차 원인분석

2-2. 예산배분에서의 사회적 집단별 특성 반영을 위한 주요 활동

❍ *(분석근거)*

❍ 예산배분

❍ 사회적 집단별 격차 원인분석

Ⅳ.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

□ 사업절차 및 운영과 관련한 인권반영 활동

분석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내용 유무	자체개선안
인권침해	사업(계획)에 인권약자에게 어떤 침해(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예’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사업(계획)에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예’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구제수단	사업(계획에) 인권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예’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사업(계획)에 사업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공개	사업(계획)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되고 제공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참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소수자·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개선안 제시)

Ⅴ.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권 증진 활동

□ 향후 인권적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는 사업(계획)

점검항목		점검결과
①	인권약자가 직접적으로 차별받거나 차별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인권약자를 비난, 멸시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평등권과 무관한 사업
②	인권약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 이 필요한가? (예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별도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자유권과 무관한 사업
③	인권약자의 공공행정이나 주민자치 등의 시민참여와 알권리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국문/영문으로 구성되어 타 언어 사용자들의 접근에 제한받는 것	□ 그렇다 □ 아니다 □ 참정권과 무관한 사업
④	인권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치매노인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 사생활/개인정보보호권과 무관한 사업
⑤	인권약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인권약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건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건강권과 무관한 사업
⑥	인권약자의 안정된 주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 그렇다 □ 아니다 □ 주거권/환경권과 무관한 사업
⑦	인권약자의 사회보장권이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한무모가족의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양육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사회보장권과 무관한사업
⑧	인권약자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접근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	□ 그렇다 □ 아니다 □ 문화권과 무관한 사업
⑨	인권약자의 교육권이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요보호아동의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교육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교육권과 무관한 사업
⑩	인권약자의 동등한 조건에서 일한 권리가 침해받거나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가? (예시) 청년고용정책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렇다 □ 아니다 □ 노동권과 무관한 사업

Ⅵ. 인권향상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구분	점검 포인트	세부 개선안 내용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활동 개선방안	법령(지침포함), 반영계획	
	예산반영계획	
	사업내용, 수행 방식 등 반영계획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권증진 활동 추진방안	법령(지침포함), 반영계획	
	예산반영계획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추가적인 인권 개선 노력	법령(지침포함), 반영계획	
	예산반영계획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2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

가. 인권영향평가단 회의결과

Ⅰ 추진 경과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할 시책으로 선정함
  - 자살률감소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로 구성함(붙임)
-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인권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샵 및 평가단 1차회의(19.11.11), 2차회의(19.11.22), 3차회의(19.11.25), 4차회의(19.11.28)실시

Ⅱ 1차 평가단 회의 결과

- 때 · 곳 : 2019. 11. 11.(월) 14:30 ~ 17:00 /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1층 교육실
- 참석인원 : 19명(인권위원 6, 인권지킴이단 5, 전문가 1, 시책담당공무원 3, 도 4)
- 내　　용 : 시책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 담당부서 해당시책 설명, 평가단 1차 회의

〈일자리노동청년과 : 외국인 근로자쉼터 운영〉

- 단장 및 서기 선출
  ⇒ 단장 : 박기남 / 서기 : 김인숙
- 외국인 근로자쉼터 운영 시책에 대한 질문사항
  ① 이용대상 자격
  ② 성별 배정 조율 가능여부
  ③ 접근방법(홍보, 이용방법 등)

④ 문화권에 대한 배려(방배정 등)
⑤ 식사 지원방법
⑥ 평균 입주기간 등
⇨ 시책 담당 팀 행사 일정으로 인한 답변 요청사항

▶ 평가기준
① 이용자 인터뷰 (문화적 차이, 식사 지원방법)
② 이용자 쉼을 위한 환경
③ 노무상담, 법률상담, 취업연계 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④ 여성보호, 안전문제 상황
⑤ 6인실 환경, 문화권으로 배정 등
⑥ 의료지원 방법
⑦ 충남 외국인 근로자 대비 시설 (전국 현황)
⇨ 현장방문 후 평가기준 확정 예정

▶ 평가단 회의 일정
⇒ 차기회의 : 현장방문 11. 22(금) 10:00~12:00(시설견학, 이용자 간담회 등)
2차 회의 11. 22(금) 12:00~14:00
3차 회의 11. 25(월) 15:00

▶ 최종보고서 작성
⇒ 개별 작성 후 취합 제출

Ⅲ 현장방문 및 2차 평가단 회의 결과

▶ 일 정
- 현 장 방 문 : 2019년 11월 22일(금) 10:00~12:00
충청남도외국인근로자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
- 2차 평가단 회의 : 2019년 11월 22일(금) 12:00~14:00
공간사이(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4), 인권센터(1)

▶ 주요내용 : 현장방문 및 기관장 질의응답, 평가기준 논의

① 현장방문 및 기관장 질의응답

- 시설운영

(식사)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6개의 방에서 국가별로 식사 만듦

(취업) 불법체류자는 받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문자를 3건씩 보내주면 3일안에 면접 보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취업협약을 하지 않음. / 수용처는 적고 구직 인원은 많음.

(교육) 1. 한글교육은 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은 하지 않음.
2. 한글교육 시 한국에 오래 체류했던 이용인들이 최근에 입소한 이용인들에게 중간통역을 해줌.

(체류기간) 50~60일 정도

(입주) 1. 예약을 받지 않으며, 오는 대로 받고 있음. (네팔이 많이 옴. / 현재 5개 나라 입주중 : 네팔,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2. 방 총 6개(남자방 5, 여자방 1) / 한방에 7명씩

(입소인원) 2019년 전체 : 577명 / 남자 : 513명 / 여자 : 64명 (월평균 55명)

(평균연령) 25세~30대

(의료보험) 자부담해야 함. / 개인적으로 아는 곳에 요청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음.

(홍보) 나라별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며 기사, 홈페이지, 소식지 및 외국인 관련 축제에서 홍보를 함.

(대기자관리) 방문하기로 연락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관리가 어려움.

(근무) 모법인이 천안시 천사운동본부이며, 야간에는 법인에서 관리해줌

(매뉴얼) 매뉴얼은 따로 없으며 운영규칙이 있다.

(불편사항 건의)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반 신입 입소자와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음.

(시설) 근로자로 신체검사를 받고 오기 때문에 휠체어 등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없음.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체불임금에 관한 문제가 많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한다.

(여성안전) 여자방문에 번호키를 설치함.

(CCTV) 총 4대 설치되어있음.

Ⅳ 3차 평가단 회의 결과

- 때 · 곳 : 2019년 11월 25일(월) 15:00~17:00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112호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3), 인권센터(2)
-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정리, 최종보고서 작성자 결정

① 현장점검에 따른 평가표 작성(현장방문 :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쉼터)

- 시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재확인 및 수정
  - 인권적 관점에서의 사업환경 특성
  -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권증진 활동
  -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
  -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권증진 활동
  - 인권향상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② 최종보고서 작성자 결정

- 작성자 : 김인숙 센터장

③ 최종보고 및 결정 회의

- 4차 평가단회의 : 2019년 11월 28일 오후3시(*장소 추후공지)

붙 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외국인근로자쉼터운영

시 책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 (일자리노동청년과 /노사협력팀)	박 선 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대표	인권위원
	김 인 숙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 유 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인권지킴이단
	이 원 하	우리놀이연구소	대표	
	유 요 열	홍성이주민센터	대표	전문가
	박 기 남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나.「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단 최종보고서

『충남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단 최종보고

- 김인숙(인권위원)

경과보고

- 1차 회의
- 2019. 11. 11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 단장 및 서기 선출
- 쉼터 시책에 대한 질의
- 평가기준 및 현장에 대한 논의

- 현장 방문 및 2차 회의
- 2019. 11. 22 충남외국인근로자 쉼터 및 공간사이
- 현장방문(센터운영 및 사업 소개, 라운딩, 기관장질의응답)
- 2차 회의 (현장 방문 결과 및 평가 기준 논의)

- 3차 회의
- 2019. 11. 25 충청남도 소회의실
- 현장점검에 따른 평가표 작성

- 4차 회의
- 2019. 11. 28 충청남도 미팅룸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정

최종 결과 보고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개시
주거권	- 7인 1실의 단체생활로 인한 사생활 보호 부족 - 입소기간(최대90일) 후에는 대책 마련이 없어도 퇴소	- 1실 동거인 조정 또는 2층 침대 설치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개인공간 확보 - 운영규정에 입소기간 초과시 유지를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고 입퇴소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유예 기간 적용 등 고려
교육권	- 주로 한국어 교육만 지원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공 필요(인권교육, 노동자 권리 교육, 문화의 이해 교육, 단기 취득 가능 자격증 교육 등)
건강권	- 건강문제 발생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 보임	- 의료기관(의료원, 보건소, 약국 등) 협약 연계를 통한 적정한 치료 지원 필요

최종 결과 보고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개시
문화권	- 문화권 별 방 배정 배려 미비	- 다양한 국가 출신들을 위한 생활 공간인 만큼 문화권을 배려한 방배정 및 조리 공간 분리 필요
안전권	-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 각 실에 잠금장치. 방범창, 비상벨 등 안전 장치 설치 강화
환경권	- 옥외 휴게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 부족	- 별도의 휴게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지원 필요
이동권 및 접근권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재활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위한 편의 시설 부재	- 1층 방 배정, 엘리베이터 설치 등

최종 결과 보고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개시
노동권	- 쉼터 전체를 센터장 1인 혼자 운영하므로 근무시간 이외(야간, 주말 등)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모두 처리하고 있어 센터장의 업무과중이 우려됨	- 쉼터 운영 인력 확충 필요
정보권	- 쉼터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 및 공간 부족	- 입퇴소 절차, 이용 및 운영에 관현 규칙 등 이용자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 게시 - 광역쉼터인 만큼 16개 시군의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개인정보 보호권	- 쉼터 홍보영상이 이용자들의 사진으로 구성	- 이용자의 동의 후 자료 활용

기타

-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한 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미등록 체류자 등)
- 쉼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운영자, 자원봉사자, 강사, 이용근로자)에게 인권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쉼터이용자들이 쉼터 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 감독기관에도 자유로운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창구 필요
- 운영규칙

- 운영규칙에 각 조별 예외 조항을 만들고 관련 논의 사항 발생 시 운영위원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는 예지 마련.

- 운영규칙 전반에 사용된(표현된) 단어, 어휘, 문장 등 인권 보호 관점으로 전환 필요

- 운영위원회를 관련기관, 시민단체, 이용자 대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다.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결과

시책 인권영향평가 토론회(12월 19일)를 개최하여 평가단의 최종보고에 대한 부서 및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쉼터 1실 면적이 6평인데 이용자는 7~8명이 거주하기에는 비좁으므로 1실 수용인원 축소 또는 2층 침대 설치 필요.
- 외국인근로자 명칭을 외국인노동자로 변경해야 함.
- 자녀 동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배려 있어야 함.
- 종교시설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교회 전입금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하며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함.
- 여성을 위한 쉼터 방이 한 개인데 더 있어야 하며 1층인데도 방범창이 없어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 필요함.
-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필요하고 충남의 35,000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쉼터 수요조사 필요함.
- 센터장 1명이 24시간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근 인원 보충 필요함.
- 이용자의 자격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인권영향평가 권고 결정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20.1.15)를 개최하여 시책별 정책 개선 권고결정을 함

도 인권위원회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결정서

시 책 명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인권위원회 검토결과	■ 개선필요 □ 특이사항 없음
개선권고	**주거공간 관련** 1. 주거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인원 조정 또는 2층침대 설치 2. 주거 공간 출입문에 성범죄 및 각종 범제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 설치 강화 3. 종교, 언어 등이 다름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문화권 별 방 배정 고려 **외국인근로자쉼터 시설 관련** 4.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설치 5. 입·퇴소 절차, 이용 및 운영에 관련 규칙 등 개방된 공간에 게재 6. 15개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입소인 교육 지원** 7. 인권교육, 노동자 권리교육, 문화의 이해교육, 단기 취득 가능 자격증 교육 등 프로그램 마련 **근무형태 관련** 8. 1인근무로 인한 건강권과 업무피로도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 **개인정보 보호 관련** 9. 홍보영상 및 사진 촬영·활용 시 개인정보 동의 필요 **건강문제 관련** 10. 이용인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협약 및 지원 필요 **시설 운영관련** 11. 외부인사 및 이용자를 참여시킨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운영규정 내 입소기간 초과 시 방안, 미등록 이용자 쉼터 이용 관련 근거기준 마련 등 추가) 12. 비밀이 보장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필요
반영결과 제출방법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 수용 : 이행계획 작성 - 불수용·부분수용 : 사유작성
비 고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2020년 1월 17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3 「자살률감소대책」 인권영향평가

가. 인권영향평가단 회의결과

Ⅰ 추진 경과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할 시책으로 선정함.
  - 자살률감소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로 구성함(붙임)
-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인권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샵 및 평가단 1차회의(11.11), 평가단 2차(11.20), 3차(11.25)회의, 4차(12.9)회의를 실시함.

Ⅱ 1차 평가단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1. 11.(월) 16:00 ~ 17:30
- 장　　소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1층 교육실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6), 도 시책담당공무원(2), 인권센터(1)
- 주요내용 :

① 자살률감소대책에 대한 설명(생명사랑팀 정영림 주무관)
  - 충남 자살률은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높은 편(17년 1위)
  - 자살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자살예방 정책추진 기반 강화 관련 사업 소개
  - 핵심전략 :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노인자살 감소대책 추진

② 자살예방사업 중 인권영향평가할 사업 선정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 사업

③ 현장 점검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④ 평가단 운영 등
- 평가단 단장 : 전재하 인권위원, 서기 : 오복경 인권위원
- 2차 평가단회의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10시, 평가기준 논의

Ⅲ 2차 평가단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1. 20(수) 10:00 ~ 12:00

▶ 장 소 : 예산문화원 회의실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전재하, 오복경, 이행찬, 김도윤, 김중식, 권주현), 인권센터(김혜영)

▶ 주요내용 : 전재하 단장(의장), 오복경 위원(서기)

① 자살예방사업 중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재논의
- 1차회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 사업 선정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의 10%만 자살 관련 상담이므로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재논의 필요함.
- 자살예방 사업 중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와 자살예방홍보를 위한 동영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선정이유 : 인권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낙인 등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크고, 자살예방 동영상에 인권적 가치 구현이 중요하기 때문)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도 상담사의 근무환경과 전문성 등을 점검하기로 함.

② 현장 점검 일정 등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 상담사 인터뷰 : '19.11.25(월) 10:00,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 언론사 기자 인터뷰 : '19.11.25(월) 11:00, 도청 206호(소회의실)

③ 평가기준 등 점검표
- 타 지자체 사례 등 참조하여 인권센터장이 준비하기로 함.

④ 평가단 회의 일정
- 3차 평가단회의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10시(충남정신건장복지센터 방문),
  오전11시, 도청 206호(소회의실)
- 4차 평가단회의 : 2019년 12월 9일(월)

Ⅳ 3차 평가단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1. 25(월) 10:00 ~ 12:30
- 장　　소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0:00~11:00), 도청 206호(11:00~12:30)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전재하, 이행찬, 김도윤, 권주현), 인권센터(김혜영)
- 주요내용 : 전재하 단장(의장), 이행찬 위원(서기)

① 24시간 위기 상담전화 사업(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상담매뉴얼 구비여부와 초기대응) 상담메뉴얼 있으며 긴급 상황시 경찰 개입 요청함
- (상담자의 근무여건과 직무교육) 센터 18명이 1달에 2,3회 당직을 하는 방식으로 1인 근무하며, 초봉은 수당합해 1호봉이 220만원 정도임.

(인권영향평가) 1인이 야간에 당직근무 형태로 상담전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근무자의 안전권 침해, 24시간 근무자의 휴식시간 미확보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며, 야간 당직을 보면서 상담 업무를 병행함에 따른 상담의 질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최선의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② 자살에 대한 기사 등 언론 모니터 사업
- (대전충남기자협회 대표 김대환 기자 인터뷰) 자살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모방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관련보도지침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으며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관련 보도 모니터를 1년에 1회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음. 자살을 미화하지 않고 부정적 선택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충남 자살예방 동영상 제작 및 광고
- (인권약자 및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포함여부) 동영상 3편에 중년 남성의 자살과 자살유가족 문제를 부각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자살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충남의 경우 특히 노인 자살이 심각한데 노인자살예방이 포함되지 않았음.
- (동영상 제작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여부) 자살유가족 등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동영상 제작에 참여함.

④ 최종보고서 작성
- 이행찬 위원이 작성하기로 함.

⑤ 평가단 회의 일정
- 4차 평가단회의 : 2019년 12월 9일(월) 오후3시

붙 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자살률감소대책

시 책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자살률감소대책 (8명,건강증진식품과/ 생명사랑팀)	전재하(단장)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인권위원
	오복경(서기)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이 충 은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임 송 자	(사)충남 청소년비전센터	대표	
	이 행 찬	천안정서발달지원센터 씨앗	대표	인권 지킴이단
	김 중 식	한국노년인권협회충남지부	사무처장	
	권 주 현	계룡시노인복지관	관장	
	김 도 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전문가

나.「자살률감소대책」인권영향평가단 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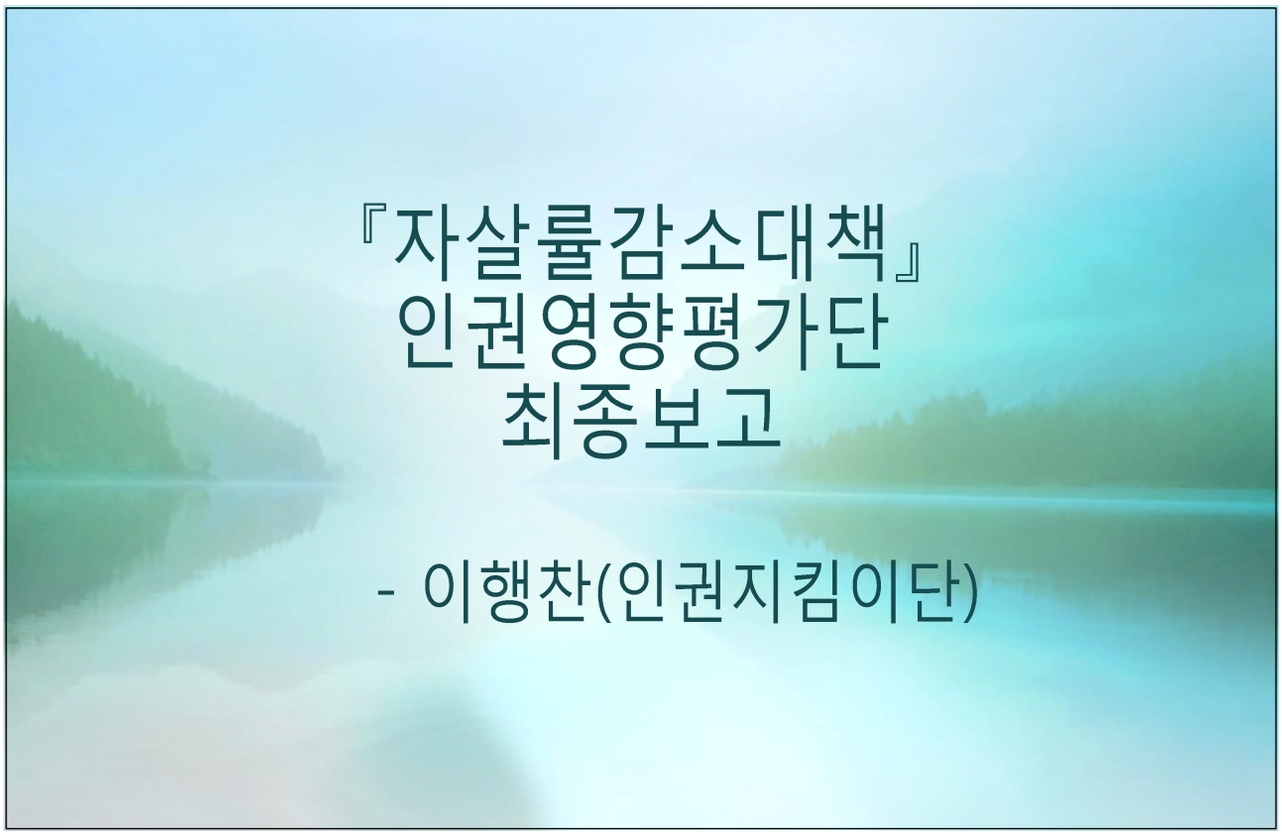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상담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교육권	자살예방센터 상담자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교육 매년 실시하고 있다.	상담원의 역량강화교육의 증대 필요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
건강권 및 안전권	자살예방실무자 정신건강 설문조사(스트레스, 우울, 삶과 죽음, 알콜, 소진)에 따르면 60명 중 14명(23%)이 고위험군이다.	상담자의 힐링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접근권	외국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이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해야 함
노동권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8명이 1명씩 야간당직, 하루 전화상담 수 40 전후로, 서울 경기의 40명 중 2명 야간당직, 하루 전화상담 수 60 전후와 비교해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야간 당직자의 안전 및 휴식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인 근무 필요. 상담자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상담과 자살상담을 모두 진행, 전문성 결여되어 상담자의 피로도가 높다.	인력보강 및 정기적 역량강화교육 실시

자살보도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교육권	자살 보도와 관련한 언론계 지침교육이 회사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기자협회에서 신규 기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실정으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나 개인 미디어등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청출입기자 및 관내언론기자들이 자살보도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홍보와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한다.
기타	큰 보도사들은 언론보도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편이나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사들은 혼자 쓰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라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족들이 다른 아픔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간담회 필요.

도민 자살예방 홍보-공익광고

인권분야	세부내용	개선안
교육권 및 접근권	자살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지상파로 일정한 시간대에 방영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장치(내용, 자막, 방영시간대)가 미흡하다.	다양한 인물(청소년, 노인, 이주자)에 맞는 내용과 횟수를 늘리고 보기 편한 시간대로 선별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약자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노인, 이민자, 성소수자 등)들이 더 많이 자살에 노출되어 있으나 영상의 등장인물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도 포함한 자살예방 동영상 제작 필요
기타	홍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더 많은 횟수의 보장과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다.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결과

시책 인권영향평가 토론회(12월 19일)를 개최하여 평가단의 최종보고에 대한 부서 및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부서 의견(생명사랑팀)

1. 24시간 상담실 :
 - 상담원에 대한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반영하겠음.
 - 종사자 자살예방 힐링 프로그램은 현재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장애인 기관과 협업의 필요 있으므로 반영하겠음.
 - 현재 당직자가 야간 상담을 하고 있음. 15명이 당직을 1달에 2번씩 1인 당직을 하고 있음. 1인 당직 문제 해결 위해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보조사업이므로 한계가 있으나 올해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자살예방사업 인력을 증원했음. 2명 근무시 당직을 매주 1회 해야 하므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현재는 2인 당직근무 실시가 어려움.

2. 자살보도 모니터
 - 도청 출입기자단, 소규모 언론사 간담회 추진 계획 있음.

3. 자살예방 동영상
 - 노인자살 2018년 3위로 개선되었으나 중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동영상이 중년 자살 예방에 맞춰져 있음. 내년엔 예산이 줄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동영상 제작 시 여러 버전으로 만들고 이주민과 장애인 등 포함시키겠음.

토론

-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관리사 대상 자살예방교육과 재가복지사업에도 연계해서 추진 바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적 자살률 편차에 대한 대책 필요함.(부서에서도 보령, 예산, 태안의 자살률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인의 경우 자살로 사망한 것을 감추고 신고 안된 경우 많고 우울증 치료 해야 함. (부서에서도 노인자살의 특수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약값을 지원하고 있음)
-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봐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함에서 원인 찾아야 함. 어느 지역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지 찾아봐야 함.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 필요.(부서에서도 유족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 유족, 자살자와 깊은 관계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가동중임.)

- 자살예방 동영상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지 않아 아쉬움. 노인의 경우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있어야 함.(부서에서는 동영상 제작비용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며 공보관실에도 지원요청하고 있음)
- 보고서에 생명권에 대한 언급 필요함. 조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필요 - 조례중 위원회 조항에 도민이 빠져 있고,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대상에 거소지와 현재지로 확대 필요.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필요.(부서에서도 조례 개정할 계획임)
- 자살예방사업을 전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3개로 한정하기 보다는 생명사랑팀이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해야 함. 조례상의 생명사랑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 필요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현장도 보고 시책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음. 권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안을 해보면 좋을 듯함. 하나씩 개선하면 의미 있음. 영향평가 시도는 계속해야 함.
- 인권영향평가가 기간이 짧으면 안되므로 부서 사업 전과정에 대해 1년 동안 영향평가가 되어야 함.
- 충남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했으니 의미 있다고 봄. 사전에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완되어야 함. 3개 시책을 해봤으니 내년에도 3개 시책을 확장해서 하면 좋겠음.
- 충남만의 인권영향평가 구축해야 함. 수원시에서는 자료를 전부 사전에 받아서 자료 검토부터 했음. 담당부서에서 협조해주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과 자살을 나누고 있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봄.

라. 인권영향평가 권고 결정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20.1.15)를 개최하여 시책별 정책 개선 권고결정을 함

도 인권위원회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결정서

시 책 명	자살률 감소대책
인권위원회 검토결과	■ 개선필요 □ 특이사항 없음
개선권고	**24시간 상담실(충남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내) 관련** 1. 상담원의 역량강화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2. 이주민과 장애인의 자살예방 상담 시스템 마련 3. 상담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 필요 4. 1인 야간 상담은 상담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 응급상황 대처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야간상담 시간 조사와 상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자살보도 모니터링 관련** 5. 소규모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필요 **자살예방 동영상 관련** 6.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내용, 자막, 방영시간대) 필요 7.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더 많이 자살에 노출되어 있으나 영상의 등장인물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반영결과 제출방법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 수용 : 이행계획 작성 - 불수용·부분수용 : 사유작성
비 고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2020년 1월 17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

가. 인권영향평가단 회의 결과

Ⅰ 추진 경과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할 시책으로 선정함
  - 자살률감소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로 구성함(붙임)
-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인권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샵 및 평가단 1차회의(19.11.11), 2차회의(19.11.21), 3차회의(19.11.28), 4차회의 (19.12.5) 실시

Ⅱ 1차 평가단 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1. 11.(월) 16:00 ~ 17:30
- 장　　소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1층 교육실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2), 도 시책담당 공무원(1), 도(1), 인권센터(1)
- 주요내용 :

① 평가단 운영
  - 평가단 단장 : 박종균 충남대표,　서기 : 미정(차기회의시 선출)

②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책에 대한 질의응답
  (대중교통팀 김상은 주무관)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설명
-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시장·군수 의무사항(운전원 관리, 운영규정, 이용자 등록 등)
- 차량증설 관련하여 12월 시·군과 논의 예정

③ 평가기준
- 이용자들의 실질적 불편함 해소 가능성
-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 제도 혹은 정책적인 측면의 운영 일원화

④ 향후일정
- 차후 논의키로 함

Ⅲ 2차 평가단 회의 결과

▶ 때 · 곳 : 2019. 11. 21.(목) 10:00~12:00 / 충청남도청 회의실(206호)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3), 인권센터(2)

▶ 주요내용

① 평가관련 논의

(교육) 운전원 및 종사자 대한 교육 필요할 것 같다. (장애에 대한 마인드 함양 필요)

(장애인 배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명서 구비

(운전원 급여) 최저임금 수준이며 시군별 급여가 다르다.

(자격부여) 서비스 질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받은 직원(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운전자격 부여 필요(면접 시 마인드, 운전평가 등)

(종사자 복무규정) 내부 규정 및 지침 확인 필요

(배차) - 차량 부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이용 어려움
- 주말 운영차량 부족
- 지역별 서비스인원 대비하여 차량 배정 필요
- 지역별 연계가 되지 않음
- 이용인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편의성 확보 필요
- 예약제를 통한 운전원과 이용인 편의성 증진

Ⅳ 평가단 현장방문 및 3차 회의 결과

- 때 · 곳 : 2019. 11. 28.(목) 10:00~12:00 /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참　석 : 인권영향평가단(3), 인권센터(1)
- 주요내용

① 현장방문 및 3차 회의

(현황) 센터장 포함 21명(장애인 : 경증2명, 중증1명 포함) 근무, 전원 정규직, 연봉제, 위탁계약기간 3년, 4대 보험 포함
Ktis : 위탁도급(인력), Bsit(전산)
* 10월 15일 정원 14명, 콜 증가와 민원 폭주로 인해 7명 증원

(배차) 지역별 차량 밀집도 차이가 있음
군 단위 : 이용자들이 병원을 많이 감
09:00~10:00, 13:00~14:00, 17:00~17:30 사이에 이용 많음
시 단위 : 직장으로 이동 많이 함
07:30~09:00, 16:30~18:00 사이에 이용 많음
* 점심은 식사 때문에 기사가 줆, 천안+아산 배차율 60% 이상

(시스템) 자주 가는 출발지, 목적지 등 정보가 등록되어서 뜸

(교육) - 장애인권교육(온라인강의 이수), 의무교육 : 인권의식, 장애인인식, 성희롱, 정보보안, 보수교육, CS교육(전문강사초빙)
- 시·군 소속 운전원 교육은 소속 지자체에서 함
* (시책인권영향평가단) - 인권인식보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 콜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운전원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직원 배려) 감정노동에 대한 실질적 해소방법 : 고충처리위원회, 매뉴얼 구비,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처 시 30분 회복시간

(콜 취소) 치매환자와 주취자로 인해 초기 응대율이 낮았지만 현재 증원과 직원들의 협조로 인해 90%이상 응대

(점자설명서) 설명서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광역, 시·군과 논의 필요

(예약) 시책인권영향평가단 : 30분 예약제를 통해 이용자, 근무자의 상호 편의 증진 할 수 있을 것 같음

(간담회) 지역별, 장애유형별 상·하반기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장 마련 제안

(필요 사항) 이용자 편의에 대한 의견 수렴자리 마련
- 시·군 협회 등 협조 필요
- 광역통합 협의체 연대하여 특수성 논의 필요

붙 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장애인콜택시광역지원센터운영

시 책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장애인콜택시광역지원센터운영(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6명	이 진 숙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
	박 종 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대표	
	김 용 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전 용 만	충청남도지체장애협회예산군지회	운영위원	인권지킴이단
	이 선 숙	충남장애인부모회보령지회	이사	
	최 영 선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전문가

나.「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인권영향평가단 최종보고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단 최종보고

- 안성대(인권보호관)

경과보고

- 1차 회의
- 2019. 11. 11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 단장 및 서기 선출
-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 평가기준 및 현장에 대한 논의

- 2차 회의
- 2019. 11. 21 2차 회의 (현장 방문 결과 및 평가 기준 논의)

- 현장방문 및 3차 회의
- 2019. 11. 28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 현장방문(센터운영 및 사업 소개, 라운딩, 기관장질의응답)
- 3차 회의 (현장 방문 결과 및 평가 기준 논의)

- 4차 회의
- 2019. 12. 5 문예회관 세미나실 105호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정

최종 결과 보고

인권분야	현황	개선안
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	- 장애인권교육(온라인강의 이수), - 의무교육 : 인권의식, 장애인인식, 성희롱, 정보보안, 보수교육, CS 교육(전문강사초빙) - 시· 군 소속 운전원 교육은 소속 지자체에서 함	- 정신적, 언어적으로 장애인이 무시나 조롱 받지 않도록 예방교육 (전문강사초빙) * 콜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운전원 교육도 통합관리 해야함
사생활 보호권	-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종사자 혹은 운전원이 외부유출 할 우려가 있음	-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주변 혹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교육
정보접근권	- 점자설명서를 통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필요	- 내용, 비용 등 시· 군과 논의하여 설치

최종 결과 보고

인권분야	현황	개선안
이동권	- 차량부족으로 인한 이용어려움(출,퇴근 주말 등) - 지역별 연계가 어려움 *군 단위 : 이용자들이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배차율 높음 *시 단위 : 이용자들이 직장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배차율 높음 - 천안 아산 지역이 배차 율 60%이상 차지	- 지역별 통계를 통한 서비스 인원 대비 차량 배정 필요 - 배차 예약제를 통한 운전원과 이용인의 상호 편의성 증진 - 통합운영을 통한 지역별 연계 필요

기타

□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
- 센터장 포함 21명 (장애인 : 경증 2명, 중증 1명 포함)
- 전원 정규직, 연봉제, 위탁 계약기간 3년, 4대 보험 포함
* 10월 15일 정원 14명, 콜 증가와 민원 폭주로 인한 7명 증원

- 이용자 편의에 대한 의견수렴자리 마련
  1) 시· 군 및 협회 등 협조 필요
  2) 광역 통합 협의체 연대하여 특수성 논의 필요

- 휴식 및 작업환경 등의 가치를 장애인에게 맞춘 작업환경 조성

- 시· 군별 운전원 관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급여 수준도 다름
  -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급여 및 수당이 달라야 함 (서비스 질 향상)

다.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결과

시책 인권영향평가 토론회(12월 19일)를 개최하여 평가단의 최종보고에 대한 부서 및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부서 의견(대중교통팀)

- 시군에서 차량운행하고(교통약자법 14조-시장군수가 차량 운행) 도에서는 배차만 할 수 있어서 문제임. 도에서 시군에 차량 증차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문제임.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관외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
- 점자안내서는 도비로 제작하기로 했음.
- 차량 운전원에 대해 도 차원에서 연 4회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 예약은 천안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하지 않고 있음. 내년에는 예약30%, 실시간 70%로 개선을 할 예정.

토론

-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자 이외에 방법도 강구해야 함.
- 시군이 도와 통합 조례 제정 필요 - 차량 증설, 운전원에 대한 인권교육, 차량 주차할 지정된 콜택시 승차장 정비 필요 (부서에서도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표준조례 권고안이 내려와서 2020년부터 시행예정임. 표준운영매뉴얼 마련해 시장군수에 공문처리 했음)
-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필요, 승차율이 87%이므로 13%에 대한 원인 조사 필요.(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에는 승차율이 96%로 올라갔음. 최빈시간에는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 등을 투입할 예정임. 바우처택시는 천안에서 만 운영하는데 아산까지 확대하고, 군지역은 임차택시로 확대, 바우처나 임차택시로 확대하면서 법정운영택시 보충하려고 함.
-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만 한정했을까. 차량 부족은 증차 계획 있으므로 권고할 게 없음. 작은 골목까지 못 가는 것도 고민해야함.
- 이미 행정이 인지하더라도 인권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또 한 번 권고할 수도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고할 필요 없으면 권고 안해도 됨. 조례의 경우는 개정해야 함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통위원회에 교통약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게 필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축소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이 평가는 장애인 이동권 인권영향평가에 포함시켜서 제안하는 게 필요함.

라. 인권영향평가 권고 결정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20.1.15)를 개최하여 시책별 정책 개선 권고결정을 함

도 인권위원회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결정서

시 책 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권위원회 검토결과	■ 개선필요 □ 특이사항 없음
개선권고	**광역이동지원센터 교육 관련** 1. 전문 강사를 초빙 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상담원, 운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차량 관련** 2. 점자설명서 구비를 통한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 3.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용자 편의 증진 4. 지역별 통계를 통한 서비스인원 대비 차량배정 필요 5. 배차예약제를 통한 운전원 및 이용인 상호 편의성 증진 6. 시·군 통합운영을 통한 지역별 연계 필요 **급여체계 개편 관련** 7. 운전원 처우개선을 통한 이용인의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질 향상 관련** 8. 시·군과 협조하여 불만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대응방법 마련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반영결과 제출방법	▶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 수용 : 이행계획 작성 - 불수용·부분수용 : 사유작성
비 고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2020년 1월 17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4 2019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며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2)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느꼈던 어려움은 첫 번째로 체계마련이었다. 충청남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매뉴얼 마련과 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체계마련이 시급하였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처럼 기존에 해오던 평가가 아니다보니 실무부서의 인권감수성과 프로세스를 이해시켜야 했다. 따라서 인권증진팀의 도움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해 보았다. 인권센터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영향평가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전면시행을 위해서 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3호에 다른 영향평가와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법무담당관의 협조로 2019년 8월 1일부로 충청남도에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게 되었고 부서 담당자, 주무팀장님들의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안내를 하였다. 전면시행 이후 아쉬웠던 점은 부서의견에서 모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내온다는 것이다. 자체평가를 하며 인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형식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자체평가의 내용을 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수정하여 인권도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2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 외에는 시행한 지자체가 없어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웠다. 당초 계획으로는 2019년 시책과 2020년 시책으로 사후 및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2020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하였다. 인권증진팀에서 부서별로 도민인권증진시책을 받아 50개를 선정하였고 그중 시책 3개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인권위원들이 선정하였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단으로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들로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총 4회에 걸친 평가단

회의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어려웠던 점은 첫째는 사후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그로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는 평가표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각 시책별로 맞춰 적용하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평가'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담당부서, 시책 대상 부서에서 부담으로 느꼈을 것 같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담당자에게 실무 담당자가 들여다 볼 수 없는 인권침해적 부분들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행정과 현장의 상호만족을 이룰 수 있는 중간 역할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사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시책 선정 후 평가표를 재작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시책 인권영향평가가 더욱 확대되어 충청남도가 더욱 인권 친화적인 시책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부록(충청남도 인권센터)

1 충청남도 인권센터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2016년 12월 개소

| 인권센터 설치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장(인권센터)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

| 인권센터 개요

- 충청남도 직영(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속)
- 센터장 1명, 인권보호관 2명

| 인권센터 주요역할

- 인권침해 및 상담·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 인권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인권정책 확대
-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예방
-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 인권센터 업무(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제19조 제2항)

-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민인권보호관(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상담·조사 및 합의 결정
- 구성 : 상임인권보호관 3명(인권센터), 비상임인권보호관 5명

2 인권침해 상담·조사 안내

1 인권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상담과 조사의 개념

가. 상담(Counseling)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내용, 가해자의 가해사실, 요구사항 등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조언하여 민원인이 이후 대응방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
- 민원인이 피해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음

나. 조사(Investigation)

- 도민인권보호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구체적 증거수집 등 일련의 사실규명 활동
- 조사에는 사건에 대한 사실판단 및 법리판단을 통하여 구제조치의 필요성 여부 또는 합리적 구제조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용어 정의

가. 도민

-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
- 충청남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나. 신청인

- 피해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받거나 제5조 제2항의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

다. 피신청인

- 다음 해당기관 및 소속공무원과 직원 중 신청인이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특정한 사람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4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가. 신청대상

다음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나 단체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나. 신청방법

- 전　　화 : 041-635-3614, 2339
- 우편·방문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권센터(충남도청 본관1층 125호)
- 전자우편 : cnrights@korea.kr
- 인 터 넷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인권센터 검색 〉 인권침해 온라인상담

다. 인권침해 상담조사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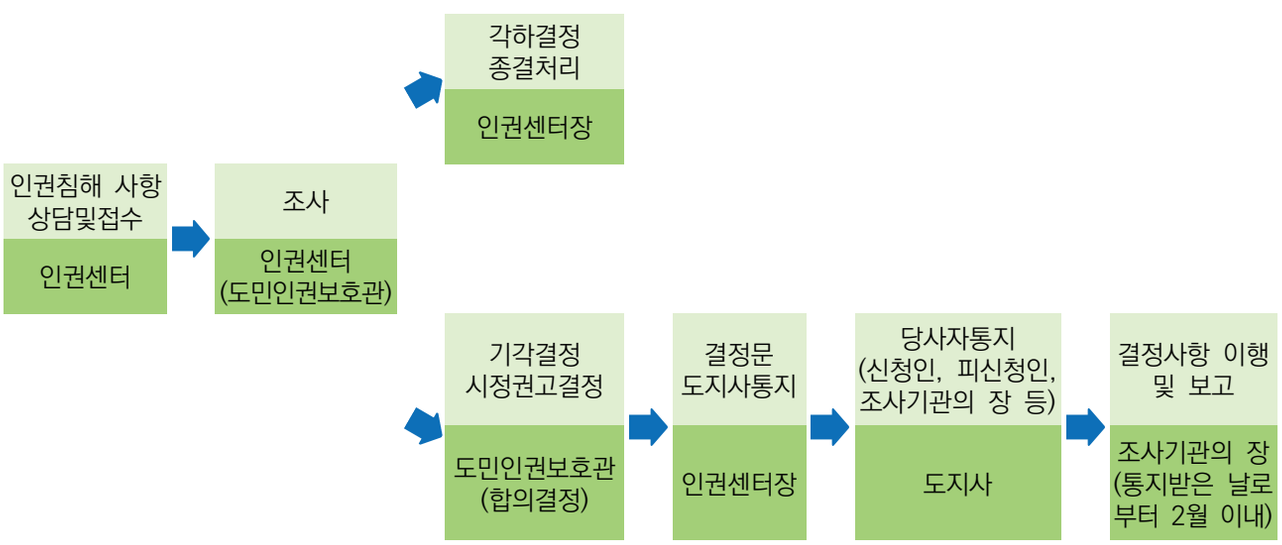

라. 직권조사

- 상임 인권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

5 처리 유형

가. 각하 또는 종결

-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법원의 재판, 수시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청인의 신청취하 또는 허위 사실일 경우

나. 기각

- 조사결과 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사결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권고

-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6 시정권고 후속조치

- 도민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각 또는 시정권고 결정
- 인권센터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 도지사는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
- 시정권고 통지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2월이내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

(앞면)

접수날짜 년 월 일						접수번호 (이곳은 인권센터 작성)	
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							
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3. 피신청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							
이 름				소 속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충청남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5. 피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			
① 일 시		② 장 소	
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칸을 늘리거나 별지 기재)			
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3 충청남도 인권정책

1 충청남도 인권정책의 발자취

2012
- 5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 5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제1기 구성·운영

2014
- 10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
- 12 제1차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5
- 1 인권전담부서 설치
- 5 충청남도 인권지킴이단 제1기 구성
- 10 도 단위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12 충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2016
- 2 도지사-시장군수 간 업무협약 체결
- 3 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
- 7 인권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
- 12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

2017
- 12 충남 노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차별사건 상담·조사 및 구제 총 38건

2018
- 5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공포
- 10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12 인권침해·차별사건 상담·조사 및 구제 총 22건

2019
-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 8 인권위원회 제3기 구성·운영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
- 10 시책 인권영향평가 실시
- 12 충남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제2차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인권정책 추진성과

○「도민 인권정책」 제도적 기반구축

[추진 체계]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14. 12월)
인권전담기구 설치('15. 1월 자치행정과內 팀)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인권지킴이단 출범(153명, '15년 9월)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14. 10월)
「도민인권 증진조례」전부개정('15. 10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15. 7월)〉

[협력체계 구축]
충남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5. 3월)
5개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제32보병사단)간 인권업무 협약체결('15. 10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구성, 도, 시군 인권업무협약('16. 2월)

○ 충청남도 인권센터 구성·운영('16년 12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센터장 및 인권보호관 활동(3명)
-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3 도민 인권교육 현황

○ 충청남도는 도민 모두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과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갖추길 바라며 인권교육을 실시함.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연 도	대 상		교육 인원	횟 수	비 고
계			39,017	686	
2015	소 계		1,324	16	
	도 공무원		1,215	13	
	도민(시설종사자)		109	3	
2016	소 계		6,859	99	
	도·시군 공무원	도	1,789	16	
		시군	292	3	
	출자출연기관		1,731	21	
	도민		3,047	59	
2017	소 계		13,228	192	
	도·시군 공무원	도	1,832	12	
		시군	447	4	
	출자출연기관		1,686	37	
	도민		9,263	139	
2018	소 계		5,044	116	
	도 공무원		107	3	
	출자출연기관		1,004	23	
	도민		3,933	90	
2019	소 계		12,562	263	
	도·시군 공무원	도	1,519	32	
		시군	1,088	8	
	출자출연기관		2,015	20	
	도민		7,940	223	

4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구

○ 위촉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장(인권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20명(위촉직 19명, 당연직 1명)

○ 회의 운영
- 정기회(연4회), 임시회(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시)

5 도민인권지킴이단

○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역할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의 인권선언('14.10.13)이후 지역별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옴부즈만 활동
- 인권정책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정책 참여)
-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약자 중에서 공개모집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 1기 : 153명('15.9.23~'17.9.22) / 2기 : 80명('18.1.30~'20.1.29)

○ 도민인권지킴이단 주요 임무(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
-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인권전담부서(인권증진팀)

○ 기능 : 인권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

○ 소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구성 : 팀장1명, 주무관 2명

○ 업무
- 인권정책 조정 및 개발, 인권 네트워크 협력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운영
- 부서별 인권시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 인권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인권규범(조례·규칙) 운영
- 공무원(도민) 인권교육 운영
- 인권문화 홍보 및 확산
- 도민인권보호 증진활동 지원사업
- 인권주간 문화행사 운영
- 인권네트워크 구성운영
-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 범죄피해자 지원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지원
- 인권센터와 업무협업 및 지원

4 충남 도민 인권선언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 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5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8-10-01 조례 제 43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증진시책토론회(이하 “시책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책토론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③ 시책토론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조정한다.

④ 시책토론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3.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 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 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도민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한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 등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인권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387호,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9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충청남도
편 집 | 충청남도 인권센터(041-635-2339)
인 쇄 | 선우(주) 041-632-2363